

2026년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배치 프로그램 하반기 기타협력분야 협력기관 모집 연장공고

서울경제진흥원(SBA)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서울소재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·스케일업하여 혁신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多 분야 전문 배치 파트너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6년 9월 15일
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

1 주요내용 요약

- 사업명: 2026년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배치 프로그램 기타협력분야 협력기관 하반기 공개모집
- 사업기간: 2026년 11월 1일 ~ 2027년 4월 30일
- 모집기간: ~ 10. 6.(화)
- 모집대상: AC/VC/대·중견기업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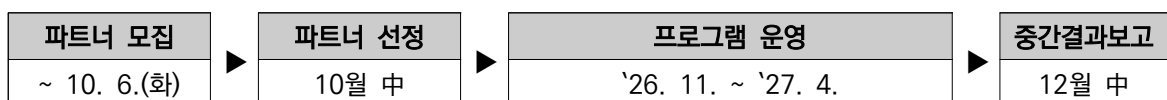
※ 협력기관 자격 및 역할 (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규정 제36조 준용)

- ① 벤처캐피탈, 엔젤투자자,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·공공 투자기관
- ② 변리, 법률, 세무, 회계 등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보육하는 기능을 가진 민간·공공기관
- ③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거나 조사·분석하는 민간·공공·연구기관
- ④ 정부기관,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등에서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
- ⑤ 글로벌 인바운드·아웃바운드 사업을 협업할 수 있는 해외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
- ⑥ 기타 서울시장이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·공공 기관

- 모집규모: 최대 5개사 ※ 적정 기업이 부족할 경우 모집 규모보다 축소하여 선발 가능
- 신청방법: 스타트업플러스(<https://www.startup-plus.kr/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운영기간: 협약일로부터 2027. 4. 30.까지
 - ※ 단, 2026. 11. 30.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담당자에게 중간 결과보고 필수
 - ※ '27년도 협력공간 재 선정시, 기존조건 연장계약(2027. 5. 1. ~ 5. 30.) 및 신규갱신계약(2027. 6. 1. ~ 2028. 4. 30.) 예정
- 주요 운영내용: 법률, HR, PoC, 투자 등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상시지원
- 협력기관 필수 KP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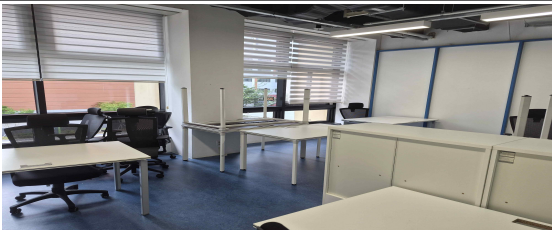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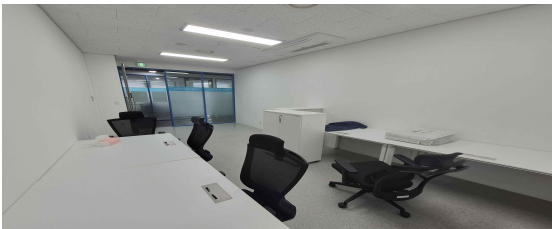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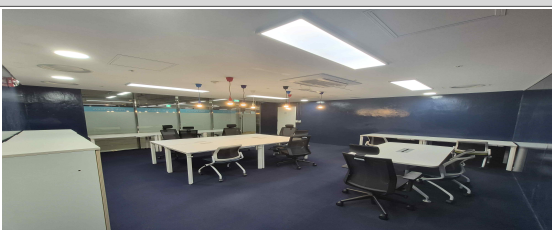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	최소 KPI
지원기업 수	입주기간 중 서울기업 대상 상시 지원	5개사
허브아워 연계	특화역량 활용 허브아워(1:1 오피스아워) 연계	1회 이상
성공사례발굴	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우수기업 사례발굴	1개사 이상
자체 추가지원	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한 KPI제안(투자유치, 매출성장 등)	-

- 지원내용 ※ 금전지원 없음
 - 추천권한: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허브공덕 입주추천 권한 (허브 추천선발 모집에 한함)
 - 사무공간: 협력사업 활동을 위한 창업허브 공덕 2층 독립형 사무공간(이용료 별도)
- 선정절차: 신청자격검토 → 1차 서류심사(1.5배수 내외) → 2차 발표심사 → 최종선정
- 추진절차



※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사업명: 2026년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배치 프로그램 기타협력분야
- 사업기간: 2026년 11월 ~ 2027년 4월
- 사업내용: 법률, HR, PoC, 투자 등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서울 소재 스타트업 상시지원
- 지원내용
- 사무공간: 서울창업허브 내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입주권 제공 / **입주선택, 유료**

201호	
공간 사진	조건 및 특이사항
	■ 호 실 명: 201호 ■ 계약면적: 25.83㎡ (적정규모: 6~8인실) ■ 계약기간: 2026. 11. 1. ~ 2027. 4. 30. ■ 이 용 료: 663,150원(VAT포함, 6개월분/1년차 가정)
210호	
공간 사진	조건 및 특이사항
	■ 호 실 명: 210호 ■ 계약면적: 27.06㎡ (적정규모: 6~8인실) ■ 계약기간: 2026. 11. 1. ~ 2027. 4. 30. ■ 특이사항: 창문 有, 계단 앞 공간 ■ 이 용 료: 694,730원(VAT포함, 6개월분/1년차 가정)
224-A호	
공간 사진	조건 및 특이사항
	■ 호 실 명: 224-A호 ■ 계약면적: 20.705㎡ (적정규모: 4인실) ■ 계약기간: 2026. 11. 1. ~ 2027. 4. 30. ■ 특이사항: 창문 없음 ■ 이 용 료: 531,580원(VAT포함, 6개월분/1년차 가정)
225-A호	
공간 사진	조건 및 특이사항
	■ 호 실 명: 225-A호 ■ 계약면적: 20.705㎡ (적정규모: 4인실) ■ 계약기간: 2026. 11. 1. ~ 2027. 4. 30. ■ 특이사항: 창문 없음 ■ 이 용 료: 531,580원(VAT포함, 6개월분/1년차 가정)
243호	
공간 사진	조건 및 특이사항
	■ 호 실 명: 243호 ■ 계약면적: 43.56㎡ (적정규모: 10~15인실) ■ 계약기간: 2026. 11. 1. ~ 2027. 4. 30. ■ 특이사항: 가장 넓으나 창문 없음 ■ 이 용 료: 1,118,350원(VAT포함, 6개월분/1년차 가정)

- 이용료 산출 방식

- $\text{㎡당 월 이용료} = (\text{㉔ 재산가격} \times \text{㉕ 이용료율}) / \text{㉖ 임대면적} / 12\text{개월}$
- ㉔ 재산가격 = 건물시가표준액 + 토지가격
- ㉕ 이용료율 = (1년차) 10/1000, (2년차) 20/1000, (3년차) 30/1000, (4년차) 40/1000
※ 입주 연차는 2024년부터 적용
- ㉖ 임대면적 = 본관 연면적 + 별관 연면적

산출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(사용료)
-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및 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평가)
-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규정 제31조(이용료의 징수), 제45조(이용료의 징수)

- 이용료(6개월 기준) ※ 재산가격 변동에 따라 입주 시점 이용료 변경 가능

구분		누적 1년차(단위: 원)	누적 2년차(단위: 원)	누적 3년차(단위: 원)	누적 4년차 이상(단위: 원)
2층 201호	25.83㎡	663,150	1,326,310	1,989,470	2,652,630
2층 210호	27.06㎡	694,730	1,389,470	2,084,210	2,778,950
2층 224-A호	20.705㎡	531,580	1,063,160	1,594,740	2,126,320
2층 225-A호	20.705㎡	531,580	1,063,160	1,594,740	2,126,320
2층 243호	43.56㎡	1,118,350	2,236,710	3,355,070	4,473,430

3

모집개요

□ 추진일정 ※ 하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모집	서류심사	발표심사	기관선정	협약체결
기관 신청·접수	1.5배수 내외	1배수 내외 선발	선정 및 사업협약	사업확정 및 협약/계약
~ 10. 6.(화)	10. 8.(목) 예정	10. 13.(화) 예정	10. 中	10. 26.(월) 예정

□ 모집대상: AC/VC/대·중견기업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

※ 협력기관 자격 및 역할 <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규정 제36조 준용>

- ① 벤처캐피탈, 엔젤투자자,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·공공 투자기관
- ② 변리, 법률, 세무, 회계 등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보육하는 기능을 가진 민간·공공기관
- ③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거나 조사·분석하는 민간·공공·연구기관
- ④ 정부기관,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등에서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
- ⑤ 글로벌 인바운드·아웃바운드 사업을 협업할 수 있는 해외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
- ⑥ 기타 서울시장이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·공공 기관

※ 모집 제외대상

- ①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·누락한 경우
-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
-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관
- ④ 과거 동일 프로그램 운영포기, 규정위배 등으로 신청제한의 사유가 있는 기관
- ⑤ 협약체결일 기준, 기타 프로그램과 협약기간 및 수행인력 참여율이 중복되는 기관
- ⑥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
- ⑦ 사기, 횡령, 고소 등 민사·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,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
- ⑧ 기타 법령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협력기관으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
- ⑨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□ 모집기간: 2026. 9. 15.(화) ~ 10. 6.(화), 22일간

□ 모집방법: 서울창업허브 플랫폼 '스타트업플러스'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

○ 온라인 접수 (스타트업플러스(<https://www.startup-plus.kr/>) ▶ Apply ▶ 지원사업 신청)

○ 제출서류 ※ 서류는 날인 후 제출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연번	제출서류	양식	비고
1	신청서 및 제안서	○	별첨1
2	기업·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	○	별첨2
3	유의사항확인서	○	별첨3. 유의사항확인서
4	기관소개서	-	자유양식 (20페이지 이내)
5	발표자료	-	자유양식 (20페이지 이내)
6	사업자등록증	-	
7	법인등기부등본	-	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8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-	신청일 기준 유효 발급분
9	4대보험 완납증명서	-	신청일 기준 유효 발급분

□ 모집규모: 최대 5개사 ※ 적정 기업이 부족할 경우 모집 규모보다 축소하여 선발 가능

□ 운영기간: 협약일로부터 2027. 4. 30.까지

※ 단, 2026. 11. 30.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담당자에 중간 결과보고 필수

※ '27년도 허브배치 협력기관 재 선정시, 기존조건 연장계약(2027. 5. 1. ~ 5. 30.) 및 신규갱신계약(2027. 6. 1. ~ 2028. 4. 30.) 예정

□ 주요 운영내용: 법률, HR, PoC, 투자 등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서울 소재 스타트업 상시지원

□ 핵심성과지표

구분	내용	최소 KPI
지원기업 수	입주기간 중 서울기업 대상 상시 지원	5개사
허브아워 연계	특화역량 활용 허브아워(1:1 오피스아워) 연계	1회 이상
성공사례발굴	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우수기업 사례발굴	1개사 이상
성과관리	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등	만족도 80점이상 (100점기준)
자체 추가지원	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한 KPI제안(투자유치, 매출성장 등)	-

※ 위 표에 제시된 '최소 KPI'이상을 제안/달성하여야 함

□ 지원규모

○ 공동협력사업비지원: 없음

○ 공간지원(필수): 1개소 내외(유료)

구분	장소	면적
사무공간	본관 2층	20.705㎡ / 25.83㎡ / 27.06㎡ / 43.56㎡ 중 1곳

□ 선정기준

-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통한 2단계 심사
- 선정기준: 심사위원 평가 최고·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**고득점 순**

※ 미선정 기업 중,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각 트랙 예비 순위 부여

○ 심사기준

유형	선정 배수	평가항목			
		구분	평가지표	세부 평가요소	점수
1차 서류 평가	1.5배수 내외	정성 평가 (100)	(사업이해도)	협력 프로그램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운영계획 적정성	20점
			(기관역량)	제안 분야에 대한 이해 참여역 전문성 및 유관 인프라 보유 수준 등	30점
			(협력계획)	세부 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30점
			(기대효과)	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성과 확산 기대효과	20점
			합계		
유형	선정 배수	평가항목			
		구분	평가지표	세부 평가요소	점수
2차 발표 평가	1배수 내외	정성 평가 (100)	(사업이해도)	협력 프로그램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운영계획 적정성	20점
			(기관역량)	제안 분야에 대한 이해 참여역 전문성 및 유관 인프라 보유 수준 등	30점
			(협력계획)	세부 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30점
			(기대효과)	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성과 확산 기대효과	20점
			합계		

□ 심사일정(안) ※ 세부일정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서류심사: 2026. 10. 8.(목) 예정 ※ 신청규모가 1.5배수 미만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

- 발표심사: 2026. 10. 13.(화)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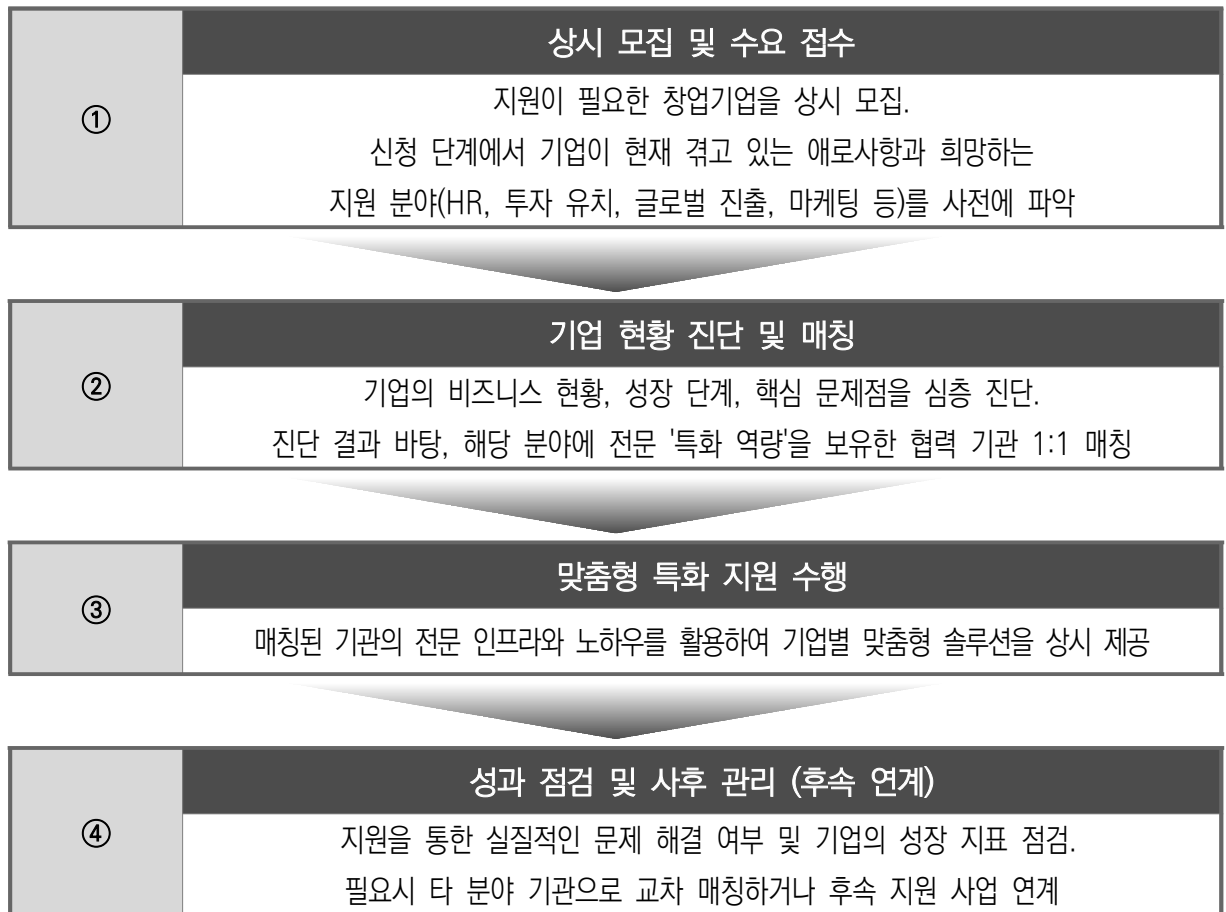
※ 발표심사 시 기업대표 또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불가피한 경우 서울창업허브 승인 하에 과제 참여자가 발표 가능

- 결과발표: 2026. 10. 20.(화) 예정

□ 운영내용

구분	세부내용
지원대상	서울 소재 7년 미만 창업 기업 (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)
모집규모	(파트너) 5개사 내외/ (스타트업) 총 25개사 내외(기관당 최소 5개사)
기타지원	(파트너) 기업 공동보육을 위한 독립사무공간

□ 프로그램 구조 예시



□ 참고사항

- 필수운영내용에 대한 최소KPI조건을 충족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함
- 선정 이후 세부운영과정은 SBA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이후 제안사항(KPI등)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허브아워란? - 필수 KPI 중 하나로 테마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스타트업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
 - 운영구조: 협력기관과 서울창업허브 공덕이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으로 운영
 - 진행 프로세스
 - 1) 협력기관이 원하는 스타트업 모집 조건을 서울창업허브 공덕에 전달
 - 2) 서울창업허브 공덕이 해당 조건에 맞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을 모집
 - 3) 모집된 기업 중 협력기관이 1:1로 만나고 싶은 기업을 선별
 - 4) 선별된 기업과 협력기관 간 1:1 프라이빗 미팅 진행 및 미팅보고서 제출

□ 유의사항

- 본 사업에 최종선정 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**지급 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**. 또한, 기한 내 제출을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
- **선정기관이 창업허브 공덕에 입주를 선택할 경우, 100% 상주인력 최소 1인 과업 참여 필수**
- 신규 협력기관의 입주는 2026. 11. 1. 예정, 계약만료일은 2027. 4. 30. 예정이며, 입주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으며 선정 확정 후, 계약까지 시기가 촉박하므로 반드시 일정 확인 후 프로세스대로 진행하여야 함

※ 진행 프로세스 및 가일정, 추진현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될 수 있음

- (1) 최종선정 발표: 2026. 10. 20.(화)
- (2)(5) 이용료 납부 공문 발송 및 세금계산서 발행: ~ 2026. 10. 26.(월)
- (3)(4) 이용료 납부: ~ 2026. 10. 26.(월)
- (6) 입주계약서 작성: 2026. 10. 26.(월) ~ 10. 30.(금)
- (2) 고객지원실 공유(집기 및 입주일자): ~ 2026. 10. 28.(수)
- (3) 보안카드 신청(협력기관→SBA): ~ 2026. 10. 30.(금)
- (7) 입주시작: 2026. 11. 2.(월) ~

- **사무공간 배정받은 후, 사무공간 지속적인 미사용 적발 시 퇴거조치 가능**
- 마감 당일 접수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이므로 마감시간 30분전 제출완료 바라며, 마감시간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
- 선정평가 결과 적정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자격 제외, 선정 취소 등 각종 제재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
- **아래사항 적발 시 선정취소 및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**
 -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허위사실 또는 제한사유 적발
 - 타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혼용 또는 이중으로 사용신청
 - 사업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중도포기 또는 미이행
-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
-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

□ 문의처: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1팀 (rodwell@sba.kr, 02-2115-2033)

연번	제출서류	양식	비고
1	신청서 및 제안서	○	별첨1
2	기업·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	○	별첨2
3	유의사항확인서	○	별첨3. 유의사항확인서
4	기관소개서		자유양식 (20페이지 이내)
5	발표자료		자유양식 (20페이지 이내)
6	사업자등록증		
7	법인등기부등본		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8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	신청일 기준 유효 발급분
9	4대보험 완납증명서		신청일 기준 유효 발급분